

第289回國會  
(臨時會)

#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19日(月)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8.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행정입법 검토의 건

**審査된案件**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박근혜·김선동·김태환·박영아·배은희·서상기·원희룡·이명규·이종혁·이학재·임동규·최연희·허범도·홍장표·황우여 의원 발의) ..... 4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성윤환·김창수·변재일·강운대·진병헌·김재균·서갑원·김동철·안민석·유성엽·최철국·박은수·김춘진·김상희·김금래·최재성·박선숙·이해봉 의원 발의) ..... 4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김정권·배영식·유기준·정희수·정해걸·이인기·이해봉·이한성·정영희·주성영·이성현·조진래·정수성·이명규·이철우·홍사덕·서상기·정갑윤·김태환·성윤환·김무성·정하균·백성운·권경석·김영진·김광림·박종근 의원 발의) ..... 4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우제창·이영애·임동규·강용석·서상기·권성동·김을동·김성수·김성희 의원 발의) ..... 4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최재성·전현희·박은수·최영희·송영길·양승조·전혜숙·백재현·곽정숙 의원 발의) ..... 4
-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 ..... 4
- 7.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 8.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허범도·이윤성·안상수·강용석·신성범·이명규·유재중·주성영·이성현·최구식·임동규 의원 발의) 4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웅전 의원 발의) ..... 4
-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 의원 대표발의)(이상득·이춘식·임동규·김학송·윤상현·안상수·최병국·배은희·김금래·권택기·정옥임·이은재·김성태·황영철 의원 발의) ..... 4
-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유기준·이영애·한선교·김정훈·박순자·황우여·김성태·서상기·이성현 의원 발의) ..... 4
- 13.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상은·신상진·정장선·구본철·이한성·김정권·양정례·이학재·조경태·안상수·김희철·김춘진·김우남·이진삼·강길부·손범규·김동성 의원 발의) ..... 4
-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송영선·이철우·김일윤·이한성·강길부·안상수·고승덕·정희수·안경률·이병석·김성태·이낙연 의원 발의) ..... 4
-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창일·박기춘·이한성·박선영·김충조·김낙성·이낙연·주승용·이윤석·김영진 의원 발의) ..... 5
-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이한성·조경

- 대·김효석·김성곤·김춘진·김종률·우윤근·김재윤·김동철·김성순·유선호 의원 발의) …… 4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주승용·강석호·송훈석·류근찬·안경률·박상은·여상규·최병국·유재중·허원제 의원 발의) …… 5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황영철·박준선·강성천·홍일표·홍장표·정영희·구본철·김성수·김영선·이성현 의원 발의) …… 5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이해봉·윤영·허천·김정권·박상은·백성운·송광호·신영수·박기춘 의원 발의) …… 5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강창일·김우남·양승조·전혜숙·이춘석·이경재·송광호·박은수·주승용·김동철·우제창·김성순·김상희 의원 발의) …… 5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유기준·최인기·임두성·강석호·김종률·원희룡·김성수·손범규·유성엽·박기춘·조원진·김효재·이정선·강길부·안효대·신상진·이해봉·우제창 의원 발의) …… 5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신학용·이성현·주성영·안효대·이사철·이인기·정희수·정해걸·송영선·박준선·윤영·조승수·이한성·신영수·이해봉·이명수·주호영·이낙연 의원 발의) …… 5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김우남·박은수·고승덕·강기갑·권영길·홍희덕·유원일·곽정숙·정동영 의원 발의) …… 5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최연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상민·홍재형·임영호·박상돈·김종률·유성엽·진성호·양승조·박대해·김재윤·이한성 의원 발의) …… 5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유승민·박민식·고승덕·이한성·이인기·강용석·주승용·김우남·정수성·이명규·신영수·정병국 의원 발의) …… 5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한성·조원진·성윤환·안경률·김성수·김정훈·김성희·이종혁·이명규·이사철 의원 발의) …… 5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최영희·김재윤·양승조·장세환·김진애·김재균·김영진·김성곤·김우남·이명수 의원 발의) …… 5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송영길·추미애·강기정·홍일표·김성순·유성엽·김종률·강석호·박선숙·김성수·최문순·최철국·이윤석 의원 발의) …… 5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기정·양승조·최철국·강창일·장세환·박은수·김동철·김영록·유원일 의원 발의) …… 5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영길·양승조·유원일·정동영·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 …… 5
3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인기·이해봉·유승민·박종근·유기준·임영호·이한성·정갑윤·구상찬·김성태 의원 발의) …… 5
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정희수·서상기·정갑윤·조진래·이학재·이명규·임동규·배은희·이철우·정해걸·권성동·김성조·주성영·김효재 의원 발의) …… 5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 …… 5
39. 행정입법 검토의 건 …… 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계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장선 오늘 원래 의결을 먼저 한두 건 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조정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박근혜 · 김선동 · 김태환 · 박영아 · 배은희 · 서상기 · 원희룡 · 이명규 · 이종혁 · 이학재 · 임동규 · 최연희 · 허범도 · 홍장표 · 황우여 의원 발의)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조영택 · 성윤환 · 김창수 · 변재일 · 강운태 · 전병헌 · 김재균 · 서갑원 · 김동철 · 안민석 · 유성엽 · 최철국 · 박은수 · 김춘진 · 김상희 · 김금래 · 최재성 · 박선숙 · 이해봉 의원 발의)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김성조 · 김정권 · 배영식 · 유기준 · 정희수 · 정해걸 · 이인기 · 이해봉 · 이한성 · 정영희 · 주성영 · 이성현 · 조진래 · 정수성 · 이명규 · 이철우 · 홍사덕 · 서상기 · 정갑윤 · 김태환 · 성윤환 · 김무성 · 정하균 · 백성운 · 권경석 · 김영진 · 김광립 · 박종근 의원 발의)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이종혁 · 우제창 · 이영애 · 임동규 · 강용석 · 서상기 · 권성동 · 김을동 · 김성수 · 김성희 의원 발의)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백원우 · 최재성 · 전현희 · 박은수 · 최영희 · 송영길 · 양승조 · 전해숙 · 백재현 ·곽정숙 의원 발의)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이종혁 · 이은재 · 신학용 · 김영진 · 최구식 · 한선교 · 이명규 · 박대해 · 장광근 · 권영세 · 정의화 · 유재중 · 장제원 · 이한성

· 손범규 · 김기현 · 신영수 · 박순자 · 김재균 · 최철국 · 정태근 · 조승수 의원 발의)

**7.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8.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 · 허범도 · 이윤성 · 안상수 · 강용석 · 신성범 · 이명규 · 유재중 · 주성영 · 이성현 · 최구식 · 임동규 의원 발의)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노영민 · 이시종 · 최철국 · 김재균 · 김창수 · 우윤근 · 김진표 · 주승용 · 이춘석 · 변용전 의원 발의)

**1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 의원 대표발의)**

(이상득 · 이춘식 · 임동규 · 김학송 · 윤상현 · 안상수 · 최병국 · 배은희 · 김금래 · 권택기 · 정옥임 · 이은재 · 김성태 · 황영철 의원 발의)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이종혁 · 유기준 · 이영애 · 한선교 · 김정훈 · 박순자 · 황우여 · 김성태 · 서상기 · 이성현 의원 발의)

**13.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안경률 · 박상은 · 신상진 · 정장선 · 구본철 · 이한성 · 김정권 · 양정례 · 이학재 · 조경태 · 안상수 · 김희철 · 김춘진 · 김우남 · 이진삼 · 강길부 · 손범규 · 김동성 의원 발의)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강석호 · 송영선 · 이철우 · 김일윤 · 이한성 · 강길부 · 안상수 · 고승덕 · 정희수 · 안경률 · 이병석 · 김성태 · 이낙연 의원 발의)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우윤근 · 강창일 · 박기춘 · 이한성 · 박선영 · 김충조 · 김낙성 · 이낙연 · 주승용 · 이윤석 · 김영진 의원 발의)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이낙연 · 이한성 · 조경태 · 김효석 · 김성곤 · 김춘진

- 김종률 · 우윤근 · 김재윤 · 김동철 · 김성순 · 유선호 의원 발의)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주승용 · 강석호 · 송훈석 · 류근찬 · 안경률 · 박상은 · 여상규 · 최병국 · 유재중 · 허원제 의원 발의)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황영철 · 박준선 · 강성천 · 홍일표 · 홍장표 · 정영희 · 구본철 · 김성수 · 김영선 · 이성한 의원 발의)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해봉 · 윤영 · 허천 · 김정권 · 박상은 · 백성운 · 송광호 · 신영수 · 박기춘 의원 발의)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강창일 · 김우남 · 양승조 · 전해숙 · 이춘석 · 이경재 · 송광호 · 박은수 · 주승용 · 김동철 · 우제창 · 김성순 · 김상희 의원 발의)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유기준 · 최인기 · 임두성 · 강석호 · 김종률 · 원희룡 · 김성수 · 손범규 · 유성엽 · 박기춘 · 조원진 · 김효재 · 이정선 · 강길부 · 안효대 · 신상진 · 이해봉 · 우제창 의원 발의)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신학용 · 이성한 · 주성영 · 안효대 · 이사철 · 이인기 · 정희수 · 정해걸 · 송영선 · 박준선 · 윤영 · 조승수 · 이한성 · 신영수 · 이해봉 · 이명수 · 주호영 · 이낙연 의원 발의)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 · 김우남 · 박은수 · 고승덕 · 강기갑 · 권영길 · 홍희덕 · 유원일 · 광정숙 · 정동영 의원 발의)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 최연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이상민 · 홍재형 · 임영호 · 박상돈 · 김종률 · 유성엽 · 진성호 · 양승조 · 박대해 · 김재윤 · 이한성 의원 발의)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 · 유승민 · 박민식 · 고승덕 · 이한성 · 이인기 · 강용석 · 주승용 · 김우남 · 정수성 · 이명규 · 신영수 · 정병국 의원 발의)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이한성 · 조원진 · 성윤환 · 안경률 · 김성수 · 김정훈 · 김성희 · 이종혁 · 이명규 · 이사철 의원 발의)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최영희 · 김재윤 · 양승조 · 장세환 · 김진애 · 김재균 · 김영진 · 김성곤 · 김우남 · 이명수 의원 발의)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송영길 · 추미애 · 강기정 · 홍일표 · 김성순 · 유성엽 · 김종률 · 강석호 · 박선숙 · 김성수 · 최문순 · 최철국 · 이윤석 의원 발의)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강기정 · 양승조 · 최철국 · 강창일 · 장세환 · 박은수 · 김동철 · 김영록 · 유원일 의원 발의)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 · 강기갑 · 강창일 · 고승덕 · 광정숙 · 권영길 · 양승조 · 유원일 · 정동영 · 최문순 · 최재성 · 홍희덕 의원 발의)
3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이인기 · 이해봉 · 유승민 · 박종근 · 유기준 · 임영호 · 이한성 · 정갑윤 · 구상찬 · 김성태 의원 발의)
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 · 정희수 · 서상기 · 정갑윤 · 조진래 · 이학재 · 이명규 · 임동규 · 배은희 · 이철우 · 정해걸 · 권성동 · 김성조 · 주성영 · 김효재 의원 발의)
3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유성엽 · 유승민 · 임동규 · 이

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  
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  
·김영진 의원 발의)

### 39. 행정입법 검토의 건

○**위원장 정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도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 제5항, 제11항, 제14항~제18항, 제20항~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36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서면으로……

○**위원장 정장선**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종혁 의원**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도 김정훈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만 제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역시 의사일정 제10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노영민 의원님이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원희룡 의원님이 오시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제3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박순자 의원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학재 의원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 북구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28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본 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수정안은 2009년 4월 20일부터 발의된 본 법의 개별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개정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법률해석 논란을 명확히 하고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네 골목상권과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제13항, 제25항, 제28항, 제32항에 대해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정부에서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

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규율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법률 제명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법안으로 법 문장의 한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을 별도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를 위한 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법안으로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기업과 공장을 공동 사용하는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택창업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의원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여기까지 직접 오신 것 보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규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재산적인 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이나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발전소의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자파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과는 다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송전·배전시설 설치 주변지역에도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시절 당시에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다소 경시함으로써 불비한 이 제도를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와서는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환경권이 보장되어서 적어도 전자파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법률적인 미비로 환경권 침해와 생명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장선** 한전이 굉장히 힘들어 할 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늘 활약이 많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지난 2010년 2월 23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은 진출이 1999년 92개에서 2009년에는 636개로 약 7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형 슈퍼마켓은 1999년 이후 9동안 3만 8762개가 줄었습니다. 30%가 넘는 폐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무한경쟁으로 진출한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SSM까지 진출해서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인을 포함한 지역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맹점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가맹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맹점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에 이에 속한 체인 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에 이에 속한 체인 점포를 포함한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에 체인 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한 중소기업자 단체나 중소기업에게 조정 신청 심의 완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조정,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와 시간 제한, 의무휴일일수, 사업 이양 등을 규정해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정지 권고를 한 경우에 그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대기업 등에게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 전에 사유가 변경·소멸했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시정지 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기업들은 무한경쟁하면서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뿐만 아닙니다. 지역에

많이 가시면 서점, 꽃집, 공구산업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경쟁체제라는 명분으로 그냥 두다 보면 한국 경제의 불균형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26항인 법률안과 청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지식경제부 소관 2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39항의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각 의원실로 배부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요약본 위주로 주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1조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등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이 포함되도록 운용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핵심기술이 국내를 벗어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 등의 목적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있다고 심사·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문

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인수·합병, 특히 합작투자에 대한 사전규제 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적극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매각·이전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이 피동적으로 외국기업에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되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 명시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두 번째 항목 김성조 의원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돌아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상반되고 있으나 중국 등으로의 진출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러한 U턴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 국내 기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사례와 배치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원대상을 국내자본이 투자된 기존의 해외생산기반이 실제 국내로 이전하는 제조업체로 한정하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 준수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비제조업종에 대해서도 기준건축면적률 제도를 도입하며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의 비중이 19.8%에 달하고 있고, 업종 간의 형평성 제고와 업종에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수요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 체계상 일부 자구정비가 필요하며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적용의무화에 따라 부칙 개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종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인증 및 인증취소사실의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상호 간 업무연계 등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KS 인증 또는 인증취소 건수가 각각 연평균 1000여 건을 넘고 통보 대상기관은 15개로 의무적 통보에 따른 적지 않은 행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항목, 개정안에서는 인증취소제품에 대한 판매 정지 및 제품 회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인증취소제품이 인명의 피해 등 안전성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 정지 또는 해당제품의 회수를 명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 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충분히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제품의 회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로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률명을 기존의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에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는바, 기존 법률의 ‘체신(遞信)’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우편이나 전신 등의 통신’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우체국이 우편 및 전신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던 용어로서 현재 우체국의 업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는 법률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문에서 ‘체신관서’ 또는 ‘체신사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준거법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우체국’ 또는 ‘우정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안에서는 사용자 하여금 부적합한 사용시설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용시설이 안전관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안전점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된 경우 허가 관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그 시설을 개선토록 하거나 허가 관청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법적 처분을 하는 절차와 별개로 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 사업자도 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외에 또 다른 절차적인 의무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현행 사용시설 안전관리 체계에서 공급자에게 사후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볼 수 있으며 절차적인 의무의 강화로 부적합 비율을 실질적으

로 낮출 수 있을지 등을 살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사일정 제11항 이상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개발에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가스사업 외에 원유의 탐사·개발 및 생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11조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를 공사의 최우선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1982년 공사 설립 당시 본격적인 천연가스 국내 보급이 공사의 기본적인 설립취지였던 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일부 사업을 각각 한국가스공사에 이관하면서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사업은 유전사업과 가스사업으로 구분하여 가스사업만을 분리해 내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현행 공공기관 기본 체계상 각 기관의 업무영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11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유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동조 제6호의 부대사업 조항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유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가 원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1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과 중복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유전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한국가스공사에 유전사업을 허용한다면 현행 공공기관의 기본 체계 하에서 한국석유공사와 그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여입니다.

다만, 유전사업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의 하나로 허용하려고 한다면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전략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 등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때와 다른 사정변경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의 형성과 현행 공공기관의 기본 체계에 맞추어 한국석유공사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적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사일정 제12항 이종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두 번째 항목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 추가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 추가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및 국익 제고 등을 위해 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의 영역보다 넓게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공단의 형태는 공기업과 달리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광해관리공단의 경우도 매년 에특회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광해방지사업비 등을 충당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사정으로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단의 국내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의 해외사업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국가재정 소요 없이 공단이 합리적인 해외사업비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허용하는 문제는 약 62조 원으로 예측되는 아시아의 광해방지사업 시장을 선점하고 자원개발과 광해방지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공단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국내에서 수행해야 할 광해방지사업 계획, 해외 수익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및 강원랜드 배당금 지출의 합목적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기술협력이나 광업자 등에 대한 지원 형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양자의 이익형량 등을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

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입법청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송배전시설지역 또는 풍력,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문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 원전 계속운영 등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종류 변경 등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에서의 추가 부담 내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둘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의무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문제, 전력사업 홍보사업 시행자의 변경 문제, 지원금 관리로 발생한 이자의 반납 면제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여지며,

셋째,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실시, 지역 소재기업 우대근거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98조의2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부가 제출한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2008년 5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총 209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체계상 균형성 일탈, 법체계 미부합 및 포괄적 재위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입법은 총 10건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법규의 개정 및 시행 지연으로 상위법규의 효력발생을 지연시킨 사례는 34건에 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지식경제부 등에

서는 향후 행정입법의 제·개정 시에는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속 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아까 의결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법령의 한글화작업 등 알기 쉬운 법령 제정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8항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7항부터 38항까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동의요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정비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엄격한 동의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업종 조합에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경제환경이 핵심역량 분야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타 전문기업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고 또한 공동 R&D 등에서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격 및 선거절차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회장 후보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신설하려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회장 후보의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보이고 회장추천위원회 신설 문제는 선거 시 지적되어 온 후보자 간 상호 비방, 선거과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중앙회 구성원의 자체 노력이 우선 요구되고 법률에서 정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에 1년 이상 기금 가입 금지조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자의 가입을 제한하여 최근 경제위축으로 제2,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자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동 기금은 영세 중소기업자의 상호 부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바 가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제사업기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금 감면조치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장선 위원장, 김기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정부 제출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

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창업지원 시책과 관련된 자료 요청 근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근거, 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등 창업지원사업의 지원근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업무 근거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년 이내로 규정된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제도 기간을,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지난번 개정안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같은 항목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사업조정제도 대상이 되어 동네상권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정제도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자 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데 체인점포 전체를 포함할 경우에는 체인점포의 많은 수가 중소기업자이므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정부정책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시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인점포 중 사업조정 대상으로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체인점포로 한정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업조정 권고내용에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 시간 등의 제한 추가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사업조정 대상이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권고내용에 서비스업까지 포함할 수 있는 권고내용의 추가적 규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내용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시 WTO 위반 소지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도 WTO 및 FTA 서비스의 접근 조항 및 우리의 양허안에 위배된다는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국제통상규범에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 서비스무역규범(GATS 규범)과 DDA 서비스무역규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의무가 무엇이며 또한 그 의무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서비스무역규범(GATS)에서 회원국의 의무는 무엇이며 그 위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성격은 모든 회원국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각 국가별로 개방한, 즉 양허한 분야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즉 개방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국가별로 그 개방 폭에 따라 의무의 폭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한 분야에 있어서도 무조건적 일반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표, 즉 양허안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무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무역규범 위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무역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범주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개방한, 양허한 분야가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둘째, 우리나라가 개방한 분야에서도 시장 접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우리나라 양허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열두 가지 분류, 사업·커뮤니케이션·건설·유통 등 열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155개 하위 서비스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비스무역규범이 상품규범과 다른 자유화 방식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품 교역과는 달리 서비스 교역에는 관세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으므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입 가능성 여부, 즉 시장 접근과 시장 접근이 허용된 경우 현지국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 여부가 자유화 조치의 중심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GATS(서비스무역협정)는 UR 협상 당시 선진산업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많은 논쟁의 결과 그 절충안으로 부분적인 합의로 타결된 최초의 불완전한 서비스 분야의 국제규범입니다. 즉 모든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 약속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 국가의 양허표에 자유화를 약속한 분야에 한정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면서 향후 주기적인 협상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간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회원국들의 개방화 방식은 개방화를 원하는 서비스 분야를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즉 기재한 분야만 자유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으로, 그리고 개방한 분야에서는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즉 기재한 제한조치 이외에는 규제하지 않음—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무역규범에서는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의무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계획표에 포함시킨 서비스 부문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양허표에 포함한 분야, 즉 개방한 분야라 하더라도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100%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교역 형태별로 개방의 형태가 상이하게 됩니다.

즉 각국이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 즉 개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 조치를 하든 각국의 재량에 속하나 일단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조건 또는 제한 이외의 차별 조치를 취하게 되면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UR 서비스무역협정(GATS, 1994)에서의 양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R 서비스무역협정에서 서비스업 155개 하위 분야 중에서 78개 분야를 양허하였고 77개 분야는 비양허하였습니다. 즉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의무란 우리가 개방한 분야, 즉 155개 업종 중 78개 업종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자유화 의무입니다.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77개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77개 서비스 분야에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과 영업일자,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의 제한은 서비스무역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즉 어떤 규제를 도입하느냐 문제는 순전히 국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개방한 분야인 78개 업종에서도 무조건적 국내 규제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협정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조건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규제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SSM과 관련되는 우리나라가 개방한 소매업에서의 의무와 국내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무역협정(1994)에서 소매업의 양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통 분야는 중개·도매·소매·프랜차이즈·기타 등 5개의 하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SSM이 관련되는 소매 분야는 식품 소매, 비식품 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소매로 분류되어 있고 이 소매 분야의 세부 분야별 개방 여부 그리고 개방된 세부 분야의 시장 접근에 대한 조건은 1994년 WTO 서비스무역규범에 첨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약속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보고서 15페이지 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식품 소매에서는 과일 및 야채·수산물 시장만 개방을 하고 그 외 대부분의 식품류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식품 소매 및 자동차·오토바이 소매 시장은 개방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식품 소매에 있어 가지고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등, 그리고 비식품 소매에서는 애완동물 및 동물사료업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통시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유통업 등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하여 개방함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상업적 주제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매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 제한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소매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제품, 빵과 제과 등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소매업에 있어 가지고 영업일자나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제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 조정 내용으로 이는 서비스무역규범에서 말하는 시장 접근에 대한 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와 그리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의 차별성을 이유로 서비스무역규범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대다수의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영업서비스 총량 제한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무역규범 제16조제2항의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서비스무역규범에서 허용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무역규범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의 영업활동이 동종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분쟁 채널의 판정 선례는 없으며 동종서비스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DDA 서비스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양허 수정에 따른 의무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WTO의 새로운 다자 간 무역협상인 DDA가 출범하였고 UR에서의 서비스무역협정 개방 수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회원국은 2003년 3월까지 1차 양허안, 2005년 2월까지 2차 양허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에 26개 업종을 새로이 포함하였고 1차 양허안을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2005년 5월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매업과 관련하여서도 2005년도 우리나라의 2차 양허안에 의하면 UR 서비스무역협정(GATS, 1994)에서보다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시장 접근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 소매업에 있어 가지는 담배를 제외한 전체를 개방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상업적 주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전문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내용은 이미 다 배포하셨던 것이고 하니까 요지를 좀 간추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요.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면 요약보고서 23페이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현** 지금 한참 계속 읽듯이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할 게 아니고, 자료를 다 배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알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WTO 규범, FTA 규범의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 구속을 받는 서비스산업에 관한 국제규제법으로는 WTO 서비스무역규범(1994),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가 있습니다. 즉 DDA 서비스무역규범, 한미 FTA 및 한·EU FTA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WTO 규범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재 GATS(1994) 규범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은 77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정안의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 및 시간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정책사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ATS(1994)에서 개방된 소매 분야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개방에서 제외 시킨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정안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조정, 품목 제한 등은 국내 정책사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내 규제사항은 향후 DDA 서비스협정이 타결되면 실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FTA 규범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 보면 WTO 규범하에서도 가능한 이런 규제사항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그리고 한미 FTA와 한·EU FTA가 비준되고 나면 미국과 EU 회원국에게는 FTA 서비스협정문의 양허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국내 규제사항으로 채택이 불가능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 FTA나 한·EU FTA 위배 여부는 비준 이후에 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을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 등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 불이행 시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을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권고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시정명령 등의 조치 전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형벌의 균형상 문제가 있으므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정 대상에 체인점포 추가, 영업품목 조정 등은 김재균 의원님 안과 같으며 김재균 의원님 안에 없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등에 대한 사업조사 신청에 대해서 보면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조사를 신청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조사 신청제도가 남용될 경우 대기

업의 영업의 비밀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바 이를 적극 활용하거나 또는 제40조의 자료제출권을 활용하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소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현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상담센터의 업무로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심판·소송대리, 분쟁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박람회 출품 상품의 상표출원 등록시 입증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위원 정태근 위원입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보면 10조제2항이 삭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 추가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외에서의 광해방지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양측이 한 측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거고 한 측에 있어서는 국내의 광산 피해도 국내 재정 가지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는 우리가 광해 관련해서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다른 개도국에서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광해 방지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환경오염 방지 사업 이렇게 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광해 방지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 관련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빼고 해외 광해 방지 사업은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간사, 최철국 간사와 사회교대)

○정태근 위원 저도 광해 방지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데 문제는 재원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도 국내의 광해 방지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해 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와 관련해서 이미 기술협력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현지에 최소한 컨설팅 이상의 협력들이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재원 문제라는 거예요, 재원 문제.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주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개도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EDCF나 여러 가지 공적부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근 위원 지금 공단에서는 어떻든 2015년까지는 배당수입이 나오니까 강원랜드의 배당수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기본적으로는 광해 방지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재원을 우선 국내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광해 방지 기술을 개도국과의 경제협력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EDCF 등 개도국 지원을 위한 그런 ODA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연계시키는 등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개정안을 허용을 하고 대신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해외 사업에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정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오늘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입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해서 SSM 규제 법안의 4월국회 처리를 촉구했는데 총리께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겠다, 믿고 맡겨 주시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한테 물으시는……

○**김재균 위원** 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렇게 별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에 동네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장관께서 취임한 작년 한 해 동안만 자영업자 수가 577만 9000명에서 551만 4000명으로 무려 26만 5000명이나 줄어서 4.6% 감소했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장관께서 마치 국회가 규제법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지난 2월국회 당시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단식농성했던 것도 정부가 제시한 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SSM을 규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돌입한 것인데 마치 국회가 처리를 지연시켜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점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는 국회가 그것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SSM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5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떠들었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SSM의 출점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마는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발언록을 보면요, “이 기간 내에 임시국회가 곧 소집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기간 내에 이 법안만은 이번 국회에 꼭 처리를 해주셔서 가지고,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시간에 계속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 골목상권 보호에 혜택을 준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출점이 되면서 골목상권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균 위원** 지금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를 해요. 내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SSM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급급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 통상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는 각도에서 통과를 시켜 달라는 말씀이지 국제규범이랑 다 무시하고 그러면 무엇을 위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분란만 생기고 결국 문제만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국제규범을 다 무시한다고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내용으로 해 달라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조화되어야 되지, 그러면 상충되면 심각한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충이 되었는데 안 되었는데는 우리 전문위원회 상충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상생법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협의해서 통과시킨 것인데요, 사업조정제도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요?

상생법 소관 부처인 중기청에서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의 김성희 의원께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당시 정부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이렇게 냈어요. “규정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거부했어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조정 권고 제도를 좀 구체화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법령

자체의 명료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을 오히려 구체화를 하면 유연성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행 규정에 권고 내용을 포함을 하면서 완화된 표현의 포괄적인 내용하고 또 적극적인 상생 협력 내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런 것은 일본이나 이런 쪽의 입법사례를 보아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김재균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고 김성희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수용이 가능하다,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같은 법인데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이종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해외에서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문은 환경부 업무와 중복되니까 자구수정, 제 생각에는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부대사업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해외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국내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데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산의 충분성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본래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

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해외에 할 수 있겠느냐, 국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광해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축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공단이 설립된 지가 십 수 년이 됐지요? 얼마 됐습니까, 공단 설립된 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광해관리공단은 2006년에 정식 발족했습니다만 그전에 석탄산업합리화……

○권성동 위원 그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도, 또 개발도상국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외사업 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국내에서의 광해방지사업이 소홀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님 나오셨는데 이 상생협력법—이 상생법—이 지금 GATS에 위반이 안 된다, 영업일수를 규제한다든가 영업품목을 조정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는 GATS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GATS 위배 문제, 거기에서 양허한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나 이런 것에 적용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국제 규범이라는 게 아까 추가로 보고한 부분에 DDA 앞으로 협상하는 내용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저희가 협상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한·EU FTA, 또 한·미 FTA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FTA의 규범 문제, 양허 범위는 WTO GATS 규범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준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GATS나 그다음에 국제 규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아까 검토

보고를 했는데, 저희도 정부 내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무부처 책임부서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은 개설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등을 통한 대규모 점포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설허가제 같은 경제적수요 심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이런 것들은 WTO 서비스 협정 16조(시장접근)에 위배가 된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영업품목 제한, 시간 제한 등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국제 분쟁의 소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하는 게 공식 입장을 밝혀둡니다.

○권성동 위원 장관님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그런 입장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런 조정절차를 통해서 SSM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면서 재래시장 또 기존의 업자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권고 이행명령에 대해서 자꾸만 처벌규정을 집어넣는데 이것 법체계상 안 맞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권고라는 것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권고했다가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그 권고 내용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을 경우에 이행명령 안 했다고 형사처벌 하고 손해배상 주고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시 사업정지권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소명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사업조정심의회 최종 결정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판결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잉입법이고 과잉처벌이다, 저는 지난번 중소기업청장 계실 때도 반대의견 피력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법을 만들면서 다른 법체계와 통일되지 않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입법권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표합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권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 委員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심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놔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 청원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이 개정 필요성 말씀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게 아마 16대 때 윤두환 전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한번 내서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만료로 인해서 그때 자동 폐기됐는데, 1989년도 법제정 당시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 이내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런데 그 당시도 물론 민원발생 지역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 고려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제정 이후에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다가 추가로 많이 시설이 되고 있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崔鉛熙 委員 그래서 설비용량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에 따라서 민원발생지역의 범위도 자꾸 넓어지고 있지요,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온배수의 영향 범위가 2km에서 8k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崔鉛熙 委員 알고 계시고요.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 委員 거기 그 구역도 8~10km로 설정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崔鉛熙 委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5km로 돼 있는데, 그밖에 말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돼 있는 경주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주변지역이—지원지역이—경주시를 포괄하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崔鉛熙 委員 그런데 원전하고 방사성폐기물장하고, 원자 방사성폐기물장하고 그 위험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가,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고 방사성폐기물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우선 기술력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물론 지금 중저준위 폐기장이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방사성 농도가 아무래도 거기가 낮으니까요.

○崔鉛熙 委員 그래서 경주 처분시설부터 경주시계까지 직선거리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일원까지가 최장 42.83km예요, 직선거리로. 그다음에 양남면 서동리 일원까지는 최단 7.31km예요, 최단 길이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지원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42.83km 또는 최단 7.31km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주 지역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최단·최장 이렇게 나오는 것에 비교해서.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원전 주변지역 지원을 변경 10km로 확대하는 것이 원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원전이 들어오면 원전 사고 발생시에 일반적으로 몇 km 바깥으로 대피하라고 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재난방지 8km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崔鉛熙 委員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반 발전소의 경우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원전의 경우에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울진 원전 관련해서 운수 배출로 인해서 어족이 고갈되고, 또 어획량이 줄어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울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원덕읍 지역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대체, 제가 전문성이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뭔가 전문인들이 양심을 속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식적으로 대피를 바깥으로 대피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장에 관해서는 경주에 이만큼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원전에 관해서는 5km로 계속 제한해 놓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우선. 장관 답변을 듣고 얘기할게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 5km가 과연 합리적이나,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은 꾸준히 그동안 제기가 돼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역을 넓히게 되면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밑으로 낮추지 않는 한은. 그러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사업자도 그 원가가 높이 올라가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부담의 정도 문제를 어느 부분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늘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원범위만 넓히면 그 혜택이 반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반 이하로 줄지 않겠습니까? 반경 5km를 10km로 하면 반보다 훨씬 더 줄겠지요,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부담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지금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주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래서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볼 게요.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현행 1인당 지원 수준이 약 5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동 폐기된 윤두환 전 의원이 얘기한 반경 10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나 더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는가 하면 5319억 46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53만 원을 기준으로 그대로 두면서 반경 10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하니까 추가로 필요한—그러니까 청

원 안대로 하는 겁니다—것이 1275억 4900만 원이예요. 이 정도 안에, 그러니까 많이 불러서 1300억 한다 해도 이 정도 수준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무리하게 될 해서 주민들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끌고루 혜택이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1275억 49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때요? 검토해 봤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검토는 해 봤는데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장관님이 말씀드리신 대로 전기요금 부담과 기존 혜택 받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崔鉛熙 委員** 아니, 1275억 4900만 원 정도인데 뭘 그렇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또 그것을 받아 줄 경우에 또 다른 지역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崔鉛熙 委員** 아니, 그 지역이라는 게 원전이 있는 전 지역을 끌고루 일반적인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5300억 정도는 좀 부담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 1275억 정도, 76억 정도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최연희 위원님께서서는 보충질의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鉛熙 委員** 보충질의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할 텐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변지역의 범위를 아까 장관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5km로 하는 아무런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온배수 및 대기오염의 확산범위가 3에서 한 6km까지

된다는 거고요. 원전의 위치제한 규정인 저인구 지역이 5.7km로 설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벌써 5km를 다 넘어서고 5.7, 6km 된단 말이지요. 과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km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마당인데요, 계속 지금 다른 지역으로 더 추가로 또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사유만 가지고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고집할 것이냐, 더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각종 지원사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해서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금처럼 기본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딱 제한돼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는 그동안 계속되는 지원금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려면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한된 구역 내에서 계속 뭔가 사업을 발굴해 내기보다는 그 사용한 퍼센트를, 지금도 범위에 따라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듯이 범위를 확장하면서 전체 과이는 같이 둔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문제, 그리고 사업의 구성내용의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준 도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사실 워낙 장기간에 걸쳐 이 지원이 반경 5km 내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불필요한 체육관 만들어 놓고 그 체육관이 완전히 풀만 나 있는 체육관으로 버려진 데도

있고요, 실컷 다리 만들어 놨는데 1년 내내 사람이나 차가 거의 통행이 없는 그런 다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범위 내에만 계속 돈을 주니까 뭔가 사업은 해야 되고 억지사업을 만드는 형태가 되어서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더 반경을 넓히면서 그 범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김성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U턴하게 되면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것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금년 1월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상의 지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고요, 물론 법안은 정기국회 때 구체적인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임대산단에 입주우선권을 준다든지 사업전환 용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은 이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나중에 실적을 잘 영업을 해서 세금 낼 형편이 됐을 때 해당되는 거니까 별론입니다마는 그냥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게 되면 또 도덕적인 해이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세제상의 혜택이나 하는 부분을 먼저 시행해 보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금전적인 지원 문제도 추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제상 혜택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 케이스하고는 저는 좀 더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해외 기업 중에서 신통치 않은 것이 기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것도 신통치 않은 것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똑같지요. 논리적으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유턴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 가서 결국 그쪽에서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오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꼭 그런 경우만이 사실 상정된다기보다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해외에 꼭 없어도 되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은 그런 직종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해외투자도 유치하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래서 세제상의 혜택이나 임대 산단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이전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단 그런 지원책을 먼저 써 보고 나서 추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지역대학 출신들 우대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 출신들 사실 좀 우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점은 공감하시나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도 이미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방대학 출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고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문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 우대를 하는,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우대 조항들, 우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미 균특법 12조에 보면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사실은 넣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김기현 위원** 그게 기본법이니깐 그 기본법에 맞추어서, 지금 기본법 자체에다가 우선채용을 가령 넣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개별법으로 가서 가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각 개별법에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법체계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별법에 그 취지를 좀 녹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김기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박근혜 의원께서 제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최근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약 160건 정도 적발됐거든요.

국정원에서 그게 예상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발표하신 거 장관께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게 아주 천문학적인 수예요. 국정원 발표는 253조 정도로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해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기술 유출 추세?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혁 위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42건에 한 80조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정의를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한 그런……

○**이종혁 위원**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앞의 것은, 전반부 조건은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국가로부터 R&D 지원을 받는다, 국가의 핵심기술로서 지정을 받는다, 국가 핵심기술의 정의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의 유출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무

손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종혁 위원**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이와 같은 국가안위와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불충분하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이 부분을 손질을 보려고 저희들이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런……

○**이종혁 위원** 저는 신성장동력산업, 우리나라 미래의 기술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데 국가의 미래가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도 넘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강조를 한 사람이거든요.

요즈음이 어떤 추세냐 하면 기술 융복합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의 국가가 자기가 오메가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는 융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파가 필요하다, 자기네들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럴 때 흔히 쓰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인수, 합작투자, 그다음에 적대적 M&A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전문용어로서 주변부 핵심기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산업용어에. 그것도 아마 장관께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려고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국의 사례를 좀 봅니다.

중국은 이런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호하는 산업조차도 WTO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허들을 치거든요.

장관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종혁 위원** 의료, 관광, 유통,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방위적 산업에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도 미약하다, 혹은 자기네들의 산업적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허들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 하면, 쌍용자동차 사례 잘 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종혁 위원** 장관님,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기술 유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서 검찰에서도, 물론 불구속수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소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 유출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조건을 구비했는데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하면 56억을 우리 국가 R&D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받았고, 그런데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연구원들에게 지시해서 하이브리드카의 중앙통제기술을 유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인수, 합병, 투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의도가 무엇이었던가가 그 뒤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기술을 이렇게 알짜배기로 싹 다 빼 가고 그들은 투자를 비롯한 대주주들의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신청하고 우리의 핵심기술만 싹 빼 간 채로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산업계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종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솔직히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도 아까 SSM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국제 OECD 자본이동규약이나 또는 FTA 같은 이런 부분하고 상충관계가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솔직히 국내에 와서……

○**이종혁 위원** 장관님, 제가 죄송한데요, 장관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장관님 답변의 그 취지를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만

살아갈 수는 없지요. 저는 장관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요……

제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종합무역법 5201조에 보면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적 안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의 합병 등 금지 이런 것들을, 중복, 원상회복 조치까지도 대통령이 명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보면 12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수합병의 방법까지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경제스파이처벌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 관련된 유사 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술유출방지지침 및 지식재산취득관리지침이 따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무역법에 보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출, 이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부 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논, 샤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해외 공장을 본토에 이전하는 조치도 하고 부품 등의 아웃소싱 등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중국은 기술을 3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수출자유기술, 하나는 수출제한기술, 하나는 수출금지기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와 같은 국가 안위나 우리 산업 유출방지법에서 해당되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국가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허가를 안 가지고는 단 일 점도 빠져나가 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경우도 있는데, 독일은 방산업체의 해외 매각 시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이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 같이 공유해야 할 약속과 별개로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이미 엄격하게 하고 있고, 대개 이런 경쟁국가들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미래의 기술경쟁력의 경쟁 상대국가 들입니다.

저는 이 입법취지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이와 같은 입법의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엄격하고도 완벽한 그런 기술 유출 정책수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규범 이런 부분도 존중이 되면서, 또 외국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종혁 위원** 국회의 이런 입법취지에 장관님은 동감하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동감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규범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상충관계를 피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긍정적 방향으로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이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지법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자력 홍보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대체로 균형 있는 홍보 사업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하시면서, 다만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홍보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조승수 위원**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절약 홍보로 20억 원을 쓰고 있고 또 전기안전공사

는 전기안전 홍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전원에 대한 일반적 홍보 이런 부분하고는 유사·중복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제10조에서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기관으로서는 또 원자력문화재단만 거론을 하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조승수 위원 다음에 의견을 내실 때 저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발전원에 관한 다양한 홍보사업이라고 제가 이 개정안 취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전기절약 문제나 안전공사의 전기안전 관련한 홍보는 유사·중복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 역시 같은 발지법에 있어서 제가 청원한, 아까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쟁점이 이렇게 10km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정부의 주된 논리인데 사실은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

○조승수 위원 발전사업자 부담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어차피 이 지원법은 전력 생산 kWh당 얼마를 떼서 그 총액을 가지고 그 5km 내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게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결국 발전사업자가 내게 되기 때문에.

○조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정부 논리가 계속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총액은 어차피 지금 규정으로 이미 얼마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이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발전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게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 국민 부담으로……

○조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왜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추가 금액을……

○조승수 위원 왜 추가 금액이 생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원 범위가 넓어져서, 지원 규정은 그대로 두고요 지원 범위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조승수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뒤에서.

총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정부 예산 부담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늘려 달라고, 확대하자는 취지는, 요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5km 이내에 지원받는 분들의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승수 위원 아니, 1인당의 혜택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추가 부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을 그대로 두고 지원 지역을 넓히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조승수 위원 ‘정부의 지원 기준을 그대로 두고’라고 어떻게 제가, 청원 내용이나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되면……

○조승수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현재 지원 규모를, 범위를 확대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장관님,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발지법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쓰여져서 구속자가 생겨나고 또 어떤 지역은 많은 잉여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쌓여 있어서 문제인 것 보도 보셨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조승수 위원 이미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부담 없이 그 지원 폭을, 아까 김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km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과학적인 혹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부담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아마 또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거기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가 나타나고 심지어 구속자가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게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폭이 확대되는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정 확대라는, 재정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얘지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 버렸는데 제가 추가질의 없이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오늘 문병철 전문위원께서 장시간 많은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 이른바 많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허가제 부분은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업품목 제한은 WTO 규범상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입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것을 주무하는 데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입니다. 다자통상협력과의 김호철 서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 다 받았습니다. 영업품목 제한은, 지금 우리가 양허한 그 내용 외의 부분에 대한 제한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2008년 9월 달에 국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서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품목 제한이 WTO 시장접근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시다라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일부 통상법 학자가 주장하는 소수설에 불과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교통상부가, 전문가들이 다 검토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WTO나 국제규범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헌법상의 영업활동 제한, 이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내법 외에 또 위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수 위원** 장관, 잠깐 답변 좀 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지금까지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허가제 도입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영업품목 제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허표 보셨지요? 제가 지난 4월 9일 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때 총리께 질의도 했고 장관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허 품목에 해산물과 일부 네 가지 품종 외에는 우리가 WTO 협정에서 개방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했기 때문에 일시나 시간 조정 그다음 품목 조정, 시설 조정,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조승수 위원** 아니, 국회입법조사처나 전문위원의 이런 의견도 사실 국회에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그것도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파고파고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이제 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그렇게 확인된 겁니다.

품목 제한은, DDA는 아직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고 한·EU FTA도 발효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WTO 서비스협정, GATT에만 그 양허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양허한 품목 외에는 개방 제한을 해도, 시장접근 제한을 해도 그게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만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됩니까? 지식경제부 입장 때문에 지난번에 대·중소 상생협력법도 법사위에 가서 그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게 지식경제부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 내에서도 저희 지식경제부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외교통상부에서 굉장히 더 제한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승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장관님!

정말 제대로 좀 파악해 보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제가 포괄적인 허가제, 지금까지 쟁점이 돼 왔던,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제한에 관해서는 이게 시장접근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방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최철국**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장관께서 조승수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그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그 부분은 외교통상부에 사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승수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이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이게 이때까지는 논란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 9월 달 그 당시에 이시종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왔나 하면 ‘영업품목 제한은 WTO 규범상 직접적인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되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공문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제한은 아니라는 게 지금 외교부도 확인하고 있고 입법조사처도 확인하고 있고 우리 지경위 전문위원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하시라는 얘깁니다. 품목 제한을 통한 시장접근 제한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그 관계는 처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조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의에 앞서서……

장관님, 요즘에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금융위원회 쪽에도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러면 현재 미국의 골드만삭스 피소된 것 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한국 쪽에도 연관돼 있다’ 이런 것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가뜰이나 지금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닥칠 경우에 상당히 금융권에서 또 규제를 하면서 금융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우리 쪽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언론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만 또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어려움을 덜 겪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챙겨 보시고, 지금 현재 대한석탄공사법에,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임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0만 원 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라는 게 또 고치면 되겠지 이러지만 정비하면서 그래도 지경부 산하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미처 검토를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양형이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사실은 너무 과중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적은 것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경부 산하의 공공기관들 전체를 한번 보셔 가지고, 물론 매출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요, 중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이것을 법령 개정한다 그래 놓고는 그냥 '50만 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러면 얼마 안 가서 이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검토만 해 보고 나갈 거냐 아니면 아예 이번에 다른 기관하고 맞춰서 이 법을—일부 수정하면 되니까요—이렇게 할 것인지는 장관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지경부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형기준 형평을 맞추는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한번 전체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 보시고……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산하기관의 수수료라든지 다른…… 수수료, 요금이지요, 검사료다 이런 것을 올리고 또 업종을 확대하고 이럴 때에도 그게 법리적으로는 아마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되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오늘 한전 사장님 안 나오셨지? 한전하고는 관계없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거기의 검사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해마다 계속 올렸는데…… 해마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거나 말거나, 위기가 왔거나 말거나 계속 올리는 거야. 그리고 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업종을 확대하는 거야. 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3년에 할 것 2년에 하는 거야. 이것 사실 공기업에서, 지금 정부는 경제 살리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데 다른 공기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아, 그것 누구는 못 합니까? 요금 올려서 흑자 내고, 업종 확대해서 흑자 내고, 또 기간 단축해서 흑자 내고, 그것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그것 못 할 사람 있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는 그렇게 요금이 책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지경부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상관없이 산하 공기업 사장, 예를 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그냥 인상하고 마음대로 업종 확대하고 마음대로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규 위원 지경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게 승인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승인도 받고 또 우리 물가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임동규 위원 그런데 승인받았으면 장관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최근에 언제 올린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임동규 위원 이게 아마 오랜 전부터 죽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최근에 와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기간이 주는 거예요. 3년짜리가 2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돌아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에 100억 들어오게 2년에 100억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검사료……

○임동규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오늘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는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죽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게 일종의 공공요금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임동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인상할 때는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라. 물가상승 그 이상은 안 된다든지 절차를 밟고 또 그다음에 기간 단축 같은 것 하는 것도……

지금 말이지요, 규제를 해제하니 규제를 줄여 주느니 하면서도 계속 규제를 늘려 가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그렇게 하겠지요. 전기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사전에, 미연에 안전검사를 해서 방지해야 된다 등등 명분이야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규제를 풀어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경부 산하의 그런 요금이라든지 또 업종 확대라든지 기간 단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스공사나 또 한국전력 같은 데는 요금 올리려면 얼마나……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계속 올리고…… 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맞는 겁니까, 장관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실제 자료를 받으면, 저는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연구소도 보니까 계속 연구비 올리고 정부 지원도 받고 출자도 받고 하면서 계속 요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서도 적자가 나고……

하여튼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어렵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철국**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九 委員** 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金容九 委員** 유통산업 관계법에 대해서는 조승수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될 사항은 뭔가 하면, 이 법이라는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또 언제든지 보면 대기업하고 맞섰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약한 사람은 지쳐서 자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권에 관계된다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줘도, 지금 대기업은 자기네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 해 놓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준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이것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중소기업법 관계는 중기청장님한테 말씀해야겠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중소기업 관계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해야 될 것 같아서……

법 개정안을 지금 중앙회에서 내 냈거든요? 내 냈는데 그 내용 중에 123조1항·2항 이게 보면, 말하자면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고초려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격을 제한시키는 법이에요.

그런데 또 타이밍도 안 맞는 게 만 8개월 후면, 내년 2월 달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8개월을 놓고 이게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회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겠다고 의견서를 냈다고 그

러는데 전문위원께서 아직 못 받으셨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그다음 2항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데 회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운영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예견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23조1항, 2항 이것을 삭제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47조6항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회비를 13회 이상 연체되어 자격 정지가 되어 있는데 회비를 한 뭉에 다 냈다 하더라도 자격 회복을 6개월 후에 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역시 회비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제한을 받는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의무를 다했다 하면 6개월 후에 회복을 시켜 준다는 건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법률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지금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청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로 한정할 경우에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또 기존의 현행법에서 법으로 안 하고 정관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정관에서 규정을 하면 된다, 회장추천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정관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규정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맞습니다.

(최철국 간사, 임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金容九 委員 그러나 원천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감독관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률적인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의 10분의 1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관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중앙회 회원이 한 600명이 있는데 60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미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후보한 사람의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관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관 사항도 감독관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18대 들어와 가지고 한번도 중앙회에 대해 문제를 언급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발언하는 자체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전임 회장이 친정집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 어려운 때 중소기업회를 대표해 가지고 노력하는 중앙회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국 위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님, 오늘 상임위 처음 출석이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 위원 취임 축하하고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 이런 데 상당히 힘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얼마만큼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해 온 것을 보면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SSM이라는 괴물이 골목 상권까지 침입을 해서 재래시

장 상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WTO, GATT 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또 관계부처에서 반대를 한다, 꼭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입장을 취해 오거든요.

조금 전에 조승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외교부의 담당 과장이나 또 입법조사처나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나 이 모든 곳에서 품목 제한하는 것은 WTO 체제에 위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계부처에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살릴 의지가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다른 관계부처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장관이나 청장이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재래시장 살려야 됩니다. 소상공인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여야 관계없이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2월 국회 때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SSM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일시정지 권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가맹점포를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기청에서 청장의 답변은 '이게 상충법 같은데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규제할 근거가 없으니까 우선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청장,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2월 달에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4월 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곧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에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후에 지금 사업조정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

오고 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김재균 위원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생법 개정안을 내서 그런 가맹점포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왔는데 중기청에서,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그런 답변을 해 왔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리고 다만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규제할 계획이다' 여기서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아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막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지금 가맹점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맹점을 전반적으로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해서 규제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 이런 문제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이라는 것이 여러 서비스 업종에 지금 포괄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활성화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가맹점까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오히려 역효과적인 그런 제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철국 위원 일반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모든 가맹점포를 제한하자는 것 아닙니다. 일반 가맹점포도, 프랜차이즈도 살아야지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이 SSM 가면을 쓰고 가맹점으로 진출하는 그것을 규제하자는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맹점포, 그것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을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에서 얼마든지 대기업이 지배하는 가맹점포는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법률공단의 해석은 아직은 가맹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정부 공단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실질적으로 SSM과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형태도 사업조정 대

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청장이, 중기청에서 이렇게 정부 법무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제가……

○최철국 위원 이것 법무공단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 왔다니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직은 가맹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해석을 받았습시다.

○최철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부 법무공단에서 잘못된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

○최철국 위원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런 능력을 가미해서 제대로 된, 이제까지 흘러온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보호하는 데 관계부처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 WTO 규정에 위배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 지금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는데 소방수로서 불속에 뛰어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실제 중소기업청장님 오셨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청장님, 어려우세요?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장님들, 대표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들으면서 해결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하여튼 최철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용구 위원님은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신 것 알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그래서 김용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중앙회 방향의 문제 제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셔야지, 오셨으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철국 위원님, 조승수 위원님, 모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마트와 SSM 판매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제품,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과 제과, 사탕류, 캔음료, 담배, 애완동물 및 동물사료업은 WTO 협정상 우리가 개방하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지요? 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UR에서 양허한 부분이 있고 FTA에서 한 부분이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담배, 낙농제품, 계란, 육고기, 설탕 이런 정도는 양허 품목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 판단의 문제이지 우리가 국제법으로 책임질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문제는 이렇습니다.

SSM에서 주로 파는 것들이 과일, 채소, 생선, 해산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실익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제한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해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연 이 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다수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WTO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요.

SSM 때문에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 규제 법안을 18대 상반기 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마트와 SSM으로 피해

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우리 국회로 쏟아질 것이고 그 책임과 명에는 우리 지경위원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SSM 규제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마냥 미루고 자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외통부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발전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로 시설과 유리화 설비를 건설·운영할 경우 이것을 특별지원사업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원전 지역 인근 주민들 사이에 유리화 설비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특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을 장려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장관께서 울진원전에서 방폐물 보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울진원전이 아마 용량 문제 때문에 빨리 경주 방폐장의 사용 허가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 정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균 위원** 지금 저장고가 넘치니까 드럼통에다가 방폐물을 포장 작업하는 임시 건물에 쌓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비좁으니까 유리화시켜서 보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작년에 국감 때 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하니까 울진원전 주민들과 대책위원회가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정부가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전쟁을 하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개정안대로 유리화 설비도 특별지원을 해 버리면 올해 포화가 예상되는 영광과 월성원전도 울진원전의 경우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유리화 설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개정안이나와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

한 경제성이나 향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유리화 설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범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봐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지금 유리화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생각도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한 1분만……

**○위원장 정장선** 제가 조승수 위원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이것 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장관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답변 중에서 ‘품목제한이 강하다’ 이렇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반복보다도 지금까지 품목제한을 논의했을 때의 얘기는 상당히 그 품목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건 아주 극소수 품목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실익도 없으면서 괜히 한국이……

**○조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채소, 과일, 생선, 해산물 이것 외에는 소매업 분야에서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비식품소매를 다 양허를 했습니다. 비식품소매를 다……

**○조승수 위원** 비식품소매 그 조항 위에, 양허 표에 2개 들어가 있는 것, 과일, 채소, 생선, 해산물, 그것 안 보셨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봤지요.

○조승수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양허품목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비식품소매를 다 양허했고요. 그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물용 사료, 가축 및 동물소매업, 이것밖에 안 됩니다.

○조승수 위원 아니요, 장관님, 지금까지 정부는 총포도검류 외에는 전부 다 시장접근 제한 없이 개방했다, 이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제한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허표에 채소, 과일, 생선, 해산물, 그것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외에 예를 들면 유가공제품, 음료수, 과자, 이런 건 어쨌든 지금 우리 개방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지금 GATS 협상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요, 비식품소매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니까요.

○조승수 위원 그 조항 위에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정확히 좀 파악하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아까 왜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이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제 공식으로 확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뒤의 참모들,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정말 답답해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장선** 예, 장관께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국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체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늦게까지 우리 오른쪽에는 배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최연희 위원님 그다음에 조승수 위원님, 김용구 위원님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 최철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 이렇게 남아 계시는 분들이 남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8항까지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제 법안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늦게 회부되어 왔지만 이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철국·박순자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희·주승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3일 날 우리 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의결할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꼭 참석을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장관께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용석	권성동	김기현	김성희
김용구	김재균	김정훈	노영민
박순자	배은희	이영애	이종혁
이학재	임동규	정장선	정태근
조승수	주승용	최연희	최철국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손범규 이정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전문위원	문병철

○정부측 참석자

지식경제부			
장관	관	최경환	
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기술표준원장	허	경	
우정사업본부장	남	궁	민
정책기획관	정	순	남
산업기술정책관	이	창	한
지역경제정책관	김	경	수
에너지산업정책관	이	관	섭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문	재	도
기술표준정책국장	최	형	기
중소기업청			
청장	김	동	선
기획조정관	송	유	종
중소기업정책국장	정	윤	모
특허청			
청장	고	정	식
산업재산정책국장	김	영	민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0. 4. 13 권성동·정옥임·고승덕·허천·  
홍영표·신학용·이종혁·이계진·안형환·  
이학재 의원 발의)

4월 14일 회부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 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14 김기현·공성진·이한성·홍사  
덕·김소남·유기준·황우여·조진래·이명  
수·현경병·유성엽·김용구 의원 발의)

4월 15일 회부됨